

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9. 6. 24

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9. 6. 25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7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(99. 7. 5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홍건표)

가. 제안이유

- 현행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두는 서기의 범위를 위원회 기능업무에 맞게 조정하여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
- 시사편찬을 위하여 자료수집 조사·연구가 필수적이므로 상임위원회에 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시사편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킴
- 또한 시사편찬 상임위원의 실비보상금이 부천시의 타상근위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형평성 유지를 위해 호봉의 조정이 필요하며, 보조원의 보수근거를 마련하여 시사편찬의 임무를 충실히 완수토록 함.

나. 주요골자

- 시사편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임위원 외에 자료수집 조사·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3조제5항)
- 위원회의 서기를 위원회 기능에 맞게 문화업무담당주사에서 문화·예술업무담당주사로 범위 확대(안 제8조제1항)
- 상임위원의 보수를 일반직 5급 5호봉에서 5급 25호봉으로 조정하고, 보조원에 대한 보수근거를 마련하여 그 보수를 일반직 6급 10호봉으로 하며, 400%의 기말수당과 100%의 정근수당을 지급(안 제10조제2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현재 시사편찬 상임위원은 몇 명입니까?	○ 1명입니다.
○ 그럼 상임위원 외에 자료수집 조사·연구보조원을 별도로 두는 것입니까?	○ 그렇습니다.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5급 5호봉과 25호봉의 보수는 얼마입니까? ○ 본 보조원은 공무원 정원과는 무관한 것입니까? ○ 시설관리공단 등 다른 상근위원과 비교하여 봉급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봉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많이 상향되는 것은 아닌지요? ○ 임기 1년에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하여 위촉하려는 의도가 아닌가요? ○ 보조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몇 명입니까? ○ 시사편찬위원회 조례는 있습니까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5급 5호봉은 월 779,300원이며, 25호봉은 월 1,209,700원입니다. ○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 정원과는 관계없습니다. ○ 타시·군과 비교하여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며, 또 사기진작 측면도 고려한 것입니다. ○ 본 상임위원은 한시적인 위원으로 매년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위촉해야 합니다. ○ 자료수집 조사·연구원으로 1명을 두고자 합니다. ○ 없습니다. 조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--	---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수정안의 요지

○ 별첨 참조

6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

7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 제164호
의결년월일	99. 7. 8 (제71회)

제출년월일 : 1999. 7. 5
제 출 자 : 행정복지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시사편찬 상임위원의 실비보상금이 경기도 타시·군 및 부천시시설관리공단 등 타 상근위원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고 또한 사기진작을 위해 현행 일반직공무원 보수 기준 5급 5호봉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5급 25호봉으로
- 타상임위원과의 형평성 유지를 이유로 일시에 20호봉을 올려 월 430,400원 55%를 증액하려는 것은 공무원을 비롯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봉급 삭감이 현실화되고 있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상임위원의 보수를 현행 일반직공무원 5급 5호봉에서 5급 25호봉으로 상향하려는 것을, 10호봉 하향하여 5급 15호봉으로 수정함.

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(실비변상)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 및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임위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 5급 15호봉, 보조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또한 이들 각각에게 400퍼센트의 기말수당 및 100퍼센트의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3조(구성) ①~④(생략) ⑤상임위원은 시사편찬, 향토사 자료발굴사업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	제3조(구성) ①~④(현행과 같음) ⑤시사편찬, 향토사 자료발굴사업 등을 위하여 상임위원 및 자료수집 조사·연구에 필요한 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,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사업기간에	제3조(구성) ①~④(개정안과 같음) ⑤(개정안과 같음)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제8조(간사와 서기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행정사업담당과장, 서기는 문화예술행정사업담당주사가 된다.</p> <p>제10조(실비변상) ①(생략)</p> <p>②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직공무원 5급 5호봉에 상당하는 보수와 40퍼센트의 기말수당 및 100퍼센트의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<u>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 단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.</u>.....</p> <p>제8조(간사와 서기)<u>문화예술행정사업담당주사</u>.....</p> <p>제10조(실비변상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</p> <p><u>상임위원 및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임위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 5급 25호봉, 보조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또한 이들 각각에게</u></p>	<p>제8조(간사와 서기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10조(실비변상) ①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.....</p> <p><u>상임위원 및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임위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 5급 15호봉, 보조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또한 이들 각각에게</u></p>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항중 "상임위원은 시사편찬, 향토사 자료발굴사업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."를 "시사편찬, 향토사 자료발굴사업 등을 위하여 상임위원 및 자료수집 조사·연구에 필요한 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 및 보조원은 사업기간에 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. 단,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."로 한다.

제8조제1항중 "문화예술행정사업담당주사"를 "문화·예술행정사업담당주사"로 한다.

제10조제2항중 "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반직공무원 5급 5호봉에 상당하는 보수와"를 "상임위원 및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임위원의 경우 일반공무원 5급 15호봉, 보조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 6급 10호봉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, 또한 이들 각각에게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